

#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발 의 자 : 이영실, 김화숙, 김혜련,  
최 선, 이정인, 봉양순,  
우형찬, 김달호, 임종국,  
권영희, 권순선, 김제리,  
이병도, 양민규, 전병주,  
이호대, 박상구, 이성배,  
김정태, 채유미, 김태수  
의원 (21명)

## 1. 제안이유

자치구의 긴급한 재해복구, 공공시설의 신설·보수 등 특별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이를 알리고 협의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 제1항).

나.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 
통지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의2 제2항).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특별조정교부금의 사전협의)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1조의2(특별조정교부금의 사전협의)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